성암초등학교 학교 규칙

개정 2013년 2월 15일
개정 2016년 7월 1일
개정 2017년 4월 6일
개정 2017년 9월 20일
개정 2017년 12월 20일
개정 2019년 4월 10일
개정 2019년 7월 1일
개정 2020년 3월 1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 제38조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성암초등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금사로 359번지에 둔다.
제4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① 본교의 학교 규칙(이하"학칙"이라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평가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 및 졸업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 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생활 규정 및 교육활동 보호와 안전대책
8. 학생자치활동 조직·운영
9. 교외 체험학습
10.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지원팀
1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12. 학칙 개정절차
13.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제 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5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6조(학년) 학생의 진급졸업은 학년제로 운영한다.
제7조(학기) 학기는 2학기로 나누며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2. 제2학기 :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

제8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 시작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3. 여름휴가
4. 겨울휴가
5. 학년말 휴가
6. 학교장 재량휴업일
7.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임시 휴업일

② 학교장은 비상재해 및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관할교육청에 보고 한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9조(학급편제) 학급편성은 당해연도 관할교육청 승인에 의한다.
제10조(학생정원) 학년·학급 정원은 당해연도 관할교육청 지침에 의한다.

제4장 교과·수업일수 및 평가

제11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 및 충청북도교육감이 정하는 바를 기본 근간으로 학교장이 정한다.

②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세부사항은 별도계획에 의한다.

제12조(수업일수 등)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연구학교 운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관련 규정에 의거 10분의 1 범위 안에서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에는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교육청에 보고 한다.

② 학생의 경조사는 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 및 관리지침에 의거 결석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3조(수업운영 방법 등) ① 수업은 주간·전일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야간수업·계절수업·시간수업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등을 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교외체험학습 요구 시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학칙에 따른다.(2013.4.9. 신설)

제14조(학생평가 등)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측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계획에 의한다.

제5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 및 졸업

제15조(입학) ①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입학 시기를 정할 수 있다.

② 입학 자격은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규정된 자로 한다.

제16조(재·전·편입학 등) ①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본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③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입학·전학 및 재·편입학 절차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의하며,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장기 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 과연령 아동이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17조(입학서류 등) ① 본교에 정시 입학하려는 자는 취학통지서와 아동 교육상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에는 교육환경 조사서와 주민등록 등본 등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본교에 수시 입학하려는 자는 본조 제1항의 서류와 학력 수준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미입학아동 등의 통보) 학교장은 취학통보를 받았거나 전학절차를 마친 아동 또는 학생 중 입학기일 또는 전학기일 후 2일 이내에 입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거주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미취학 현황을 읍·면·통장에게 통보하고 교육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미취학 및 무단결석 관리대응매뉴얼에 따라야 조치해야 한다.

제18조(수료 및 졸업) 학교장은 의무교육 관련 법령에 의거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및 전 학년의 졸업을 인정한다.

제6장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제19조(취학의무의 면제 등) ①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는 의무교육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을 받되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타당성을 심사하여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및 유예를 결정하되, 특별한 사유 없는 아동의 미출석 등은 경찰에 즉시 수사의뢰한다.
②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를 결정한 때에는 보호자 및 읍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한다.
③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취학의무의 면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⑤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됨.
   - 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포함
   - 위원회 외부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 포함
2. 운영

- 취학 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
- 미취학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 내교 시 미취학 사유 확인
-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학에 관한 사항의 심의
- 미취학 아동·학생에 대한 개인별 관리카드를 마련, 집중 관리 필요 대상을 정하여 관리
- 그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20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①학교장은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면제·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재입학 및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결과에 의거 학년을 정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본문 제20조 제1항에 의한 유예자에 대하여 본문 제20조 제1항의 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유예 학생의 보호자에게 복학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④의무취학면제(유예)자는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제1차 유예자에 대하여 다음 학년도에 재차 유예여부를 파악하고 관계서류는 학년도별로 편철하여 당해 학령대상자의 의무교육 해제 시 까지 보관한다.

제7장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제21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①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1학년에서 3학년, 2학년에서 4학년, 3학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조기진급할 수 있다.(단, 적용 학년은 학교 여건과 실정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한다.)

②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5학년에서 조기졸업할 수 있다.(차상급학교로 조기입학(등록)을 하면 조기 졸업으로 인정한다.)

제22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조기진급・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각급 학교의 장으로부터 상급학교에 조기입학 자격을 받은 자는 상급학교에 조기입학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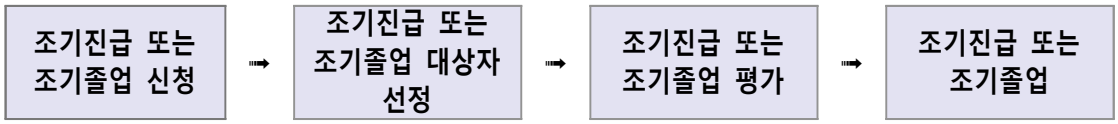
제23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기준)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 교과목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제24조(조기진급 또는 조기 졸업 신청) 조기졸업을 원하는 학생, 학부모는 학교에 신청한다.(3~4월)

1.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평가 대상자의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신청을 받아 학년 초 1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단, 조기진급을 신청한 신입생의 경우는 8월 이내에 실시한다.

제25조(선정 절차)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평가 대상자의 선정은 다음 절차를 따른다.



1.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 후 학급 담임 추천
2. 제5조(선정 기준)의 기준 고려
3.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사정
4. 학교장 선정

제26조(학습 방법) 학습방법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조기이수 해당 학년 교과목 담당 교사들의 지도하에 대상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학습 지원) 학교장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 학생의 학습을 최대한 지원한다.

제28조(평가 및 진급시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는 진급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한다.

제29조(조기이수 교과목) ① 조기진급 대상자는 조기이수 대상 학년, 조기졸업 대상자는 6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에 대한 조기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의한다.

제30조(조기이수 기준)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 교과목의 이수 기준은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가 정하는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중 과반 수 이상의 교과목에서 학업성취도가 A(100점 만점의 90%이상)이어야 한다.

제31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평가) 과목 이수는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제32조(환원 조치) ① 조기진급자가 진급학년에서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이나 동의를 받아 환원 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원 조치 대상자는 다음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33조(조기진급 신청 시기) 제23조(선정 기준)에 해당하여 상급학교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제34조(조기입학 선정 기준)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 교과목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 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에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제35조(조기입학 자격 평가) ① 상급학교 조기입학 신청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 후 10일 이내에 교과목별 평가를 실시한다.

②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③ 상급학교 전형 응시 신청자를 대상으로 6학년 교육 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에 대한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중 과반 수 이상의 교과목에서 학업성취도가 90%이상이어야 한다.

④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의한다.

⑤ 상급학교 전형 응시 자격 평가에 통과되었으나 해당 중학교 전형에서 불합격하여 타 학교 전형에 응시하기 위해 자격 평가가 필요한 경우, 해당 학기에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기 실시된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36조(조기입학 전형 응시)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제37조(조기졸업 인정) 상급학교로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학교에 입학(등록)한 경우에는 본교를 조기졸업한 것으로 본다.

제38조(구성)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교사가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④ 교사는 각 학급 담임 및 전담 교사를 포함한다.

제39조(역할) ①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는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를 한다.

②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는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한다.

제40조(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평가) ①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4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42조(업무 처리) 조기진급 등 대상자가 속한 학급의 담임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 정리, 성적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3조(조기진급 등 대상자의 성적 처리) 조기진급자의 전(前)학년, 조기졸업자의 6학년 학교생활기록부의 모든 란은 공란으로 두되, 교과목별 조기이수인정평가 결과만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입력한다.

제44조(운영 세칙) 이 규정 이외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따로 결정한다.

제8장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제45조 (교무위원회 구성) 2012.12. 단위학교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에 의거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 관련 업무와 제21조제2항의 규정 및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 및 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재.편입학 시 학년 결정을 위한 이수인정평가 관련 업무 처리는 교육과정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고, 교사 및 학부모, 교육관련 전문가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적임자가 없을 경우 위원은 교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46조 (역할 및 업무) 위원회의 역할 및 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평가 및 업무관련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① 역할

1.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
2.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3. 유예 및 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재.편입학 시 학년 결정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② 업무

1. 조기진급·졸업·진학 등 조기이수인정평가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방법 및 시기의 결정
2. 조기진급·졸업·진학 등 조기이수인정평가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문항의 난이도, 출제범위, 문항수, 배점 등)
3.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와 조기이수인정평가 실시 및 성적 산출
4. 기타 평가위원회 평가와 관련된 업무

제47조 (의결 정족수)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48조 (이수인정 평가의 시기) ① 조기이수 대상자의 조기이수 인정을 위한 평가 및 유예자, 귀국학생의 학년 결정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는 해당 사항이 있을 시 수시로 행한다.

② 조기졸업 대상자의 이수인정평가위원회는 9월 초와 12월 초에 개최하며,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은 조기졸업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49조 (이수인정 평가의 방법) 조기진급・졸업・진학 및 유예자, 귀국학생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는 지필평가, 실험평가, 실기평가, 면접 및 관찰 등 다양한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실시하되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① 조기진급・졸업・진학

1. 재학 중에 교내봉사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
2. 교육과정위원회 이수인정평가에서 각 과목 95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② 유예자 및 귀국학생 학년 배정

1. 교육과정위원회 이수인정평가에서 각 과목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제50조 (이의 신청 및 재평가) ①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5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②개 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①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52조(기타) ① 기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에 관한 내용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② 이 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9장 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제53조(기타의 비용징수) 학교장은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0장 학생생활규정 및 교육활동 보호와 안전대책

제1절 포상·징계 및 훈육

제54조(포상) ① 학교장은 품행 방정 및 학업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시행하기 위하여 따로 포상규정을 정한다.

제55조(징계)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이내, 연간 30일이내의 출석 정지

② 학생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처분을 결정한다.

③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경우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한다.

④ 제1항의 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이수.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방법 및 조치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의 특별교육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금지한다.

⑥ 학생징계는 아래 표의 해당자에 대해 실시 할 수 있다

구분	항	징계 대상	징계 수준
예절	1	언행이 거칠거나 불손한 학생	징계 수준은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학교폭력사안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사안조사 후 결정한다.
	2	교사에게 불경한 언행을 한 학생	
	3	언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준법	4	교사에게 불손한 반항을 하거나 폭력을 가한 학생	
	5	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6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7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한 학생	
	8	공공기물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절취한 학생	
	9	상습적으로 도벽을 한 학생	
수업	10	수업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11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12	수업을 거부한 학생	
	13	고사 중 부정행위(휴대폰 및 전자기기 소지 포함)를 했거나 동조한 학생**(해당과목 0점 처리)**	
	14	시험을 거부한 학생	
	15	시험문제를 절취 및 누설한 학생	
근태	16	미인정결석, 무단지각, 무단조퇴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17	무단가출(외출)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학생	
	18	정당한 사유 없이 연(連)10일 이상 미인정결석한 학생	
	19	정당한 사유 없이 연(連)15일~30일 이상 미인정결석한 학생	
약물	20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21	흡연 또는 음주가 상습적인 학생	
퇴폐행위	22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상습 복용한 학생	
	23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	
	24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25	불량 비디오 및 음란 동영상 파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학생	

구분	항	징계 대상	징계 수준
	26	불건전한 이성 교제 등으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27	타인을 희롱하거나 심한 욕설을 한 학생	
집단	28	불법집회 또는 불량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29	허가 없이 서클을 조직 운영하여 교칙을 문란하게 한 학생	
	30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또는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31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동맹 휴학을 선동, 주동, 참여한 학생	
	32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학생	
정보통신	33	음란·폭력 사이트에 접속한 학생	
	34	불건전한 영상물을 제작, 복제 유포한 학생	
	35	휴대폰 사용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학생	

⑦ 대상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장애정도, 특성 등에 대한 의견을 반드시 참고한다.

⑧ 학생의 징계 외의 지도 방법으로 다음 각호와 같은 훈육을 허용할 수 있다.

1. 교실 뒤에 서서 수업 듣기
2. 운동장 걷기
3. 사랑의 화초 가꾸기
4. 반성문 쓰고 부모님께 확인 받아오기
5. 운동장 휴지 줍기
6. 좋은 글귀 적으면서 마음 다스리기
7. 사과편지 쓰기
8. 학급에서 정한 규칙 준수하기
9. 보호자 소환 및 보호자 동반 상담

제2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제56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7조 (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② 학교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자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제58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자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⑦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제59조의 2(장애학생의 보호)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가.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전담기구에 특수교육 전문가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장애정도, 특성 등에 대한 의견을 반드시 참고하여야 한다.

제60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②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으로 산입할 수 있다.

③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3절 두발·복장 등 용모 및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제61조(필요성) ① 아동.청소년 시기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담배 및 약물류 등의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② 화기류, 음란물 등 학교생활에 적합하지 않는 물건의 소지 및 사용을 지도.예방함으로써 안전하고 건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③'두발.복장 등 용모규정'은 초등학교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되는 실정이나, 학생의 건강 및 폭력으로부터의 예방을 위하여 규정을 마련한다.

제62조(운영) ① 학생은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라이터, 성냥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류(공구류, 칼 등) 등을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②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소지품 검사는 반드시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로 제한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급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지양한다.

④ 소지품 검사 시 학생, 학부모는 교사의 전문적.교육적 판단을 존중하여야 하며, 교사는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장 또는 교감 입회하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소지품의 검사는 담임교사 또는 지도교사가 실시한다.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하도록 한다.)
⑧ 두발의 모양 및 장신구 등의 착용은 허용하나, 청소년기 학생의 건강을 해치는 염색 및 탈색은 자제하도록 한다.
⑨ 교복 등 복장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지나치게 짧은 하의 착용은 성폭력으로부터 노출될 위험의 소지가 있으므로 착용을 자제하도록 한다.

제4절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제63조(필요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휴대전화 및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의 사용은 필수적이지만, 학교 내에서의 무분별한 사용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타인을 배려하고 수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학생 휴대폰 사용 등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기준을 학칙으로 정하여, 건전한 학교생활 풍토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제64조(운영) ① 휴대전화 소지는 자유로이 하나, 학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세한 사항은 학생생활규정 제25조에 의한다.
②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한다.
③ 수업 중 휴대전화의 벨이 울릴 경우 , 사용 시 적발된 경우는 회수 후 담임교사가 학부모와 상담하고 돌려주도록 한다.
제65조 (기타 전자기기 사용 제한) MP3 플레이어, PMP, PDA, 게임기기 등에 대 해서도 본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을 제한한다.

제5절 학생안전대책

제66조(학생의 안전대책 등) ① 학교장은 학교시설(학교담장을 포함)을 설치.변경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1.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등의 세부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2.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학교주변에 대한 순찰.감시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필요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④ 학생의 안전대책 등을 수립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다.

제6절 교육활동 보호

제67조(목적) 본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당사자 상호간에 협력하고 존중하는 신뢰 기반 구축을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8조(적용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의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과 관련 대통령령 제30119호에 따른 교권보호 및 교육활동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69조(교권보호의 기본원칙) 교권보호에 관한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교원은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권리를 당연히 누리며,「대한민국헌법」과 개별 법률이 정한 이외의 이유로 부당하게 제한당하지 아니한다.
2. 교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70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① 교원의 교육활동은 법령에 따라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② 교원은 법령에 따라 교육과정의 재구성, 교재 선택 및 활용, 교수학습 및 학생평가에 대해 자율권을 갖는다.

③ 교원의 수업 등 교육활동과 관련된 내용은 법령에 따른 절차 이외에는 본인의 동의 없이 교육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제공되거나 공개될 수 없다.

④ 교원은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교원에게 폭력, 폭언, 조롱, 희롱, 폄하, 농락 등의 방법으로 교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학칙에 어긋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하거나 그 밖의 교육적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학교장의 학생에 대한 징계는「초.중등교육법」제18조에 따른다.

⑤ 교원은 학부모가 수업 및 교육적 지도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교원에게 폭력, 폭언, 조롱, 희롱, 폄하, 농락 등의 방법으로 교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교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1조(교원, 학부모, 학생의 책무) ① 교원은 동료교원 및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② 교원은 학생의 바람직한 교육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자신을 연찬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폭력, 약물, 자살 등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여야 하며, 학생과의 건전한 소통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인성함양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는 교권을 존중해야 한다.

⑤ 학생은 교권을 존중하고, 학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11장 학생자치활동 조직.운영

제72조(자치활동) ① 학교장은 학생자치활동을 위하여 전교어린이회를 두며,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계획에 의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자치활동을 보호.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③ 교육 3주체(학생.학부모.교사)의 생활 협약을 제정하여 실천한다.

제12장 교외 체험학습

제73조(체험학습의 허가) ① 보호자가 동의하여 신청한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의 허가에 의하여 실시한 교외체험학습은 출석으로 인정하되, 교외체험학습 신

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해하여야 한다.(공휴일 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제74조(체험학습의 유형 및 출석인정) ①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의한 체험학습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② 학부모나 가족 및 교사가 함께하는 체험학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출석으로 인정한다.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3.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③ 학교장이 국내.외 위탁하는 체험활동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75조(체험학습 기간 등) ① 국내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며, 학부모가 신청하는 체험학습은 당해 학년도 7일 이내로 한다.

②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허가시 30일 이내로 하되 방학기간을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단, 방학기간은 체험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은 위탁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에 따라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⑤ 자비로 국외로 가는 미인정 유학이나 연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13장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지원팀

제76조(구성) ①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② 매 학년 시작일부터 2주 이내에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해야 한다.

제77조(운영) ①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8조(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되, 그 구체적인 입급 대상자의 판별 및 선정 방법은 별도 계획에 의한다.

제14장 교권보호

제79조(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80조(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 제18조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권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및 조치 사항과 절차
2. 교육활동 침해 은폐방지 및 예방 대책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절차
4. 그 밖에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정한 사항

제81조(성암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①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와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지침에 따라, 성암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한다.

②성암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성암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두어 정하되,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침을 준수한다.

제15장 학생 출·결석 관리

제82조(목적) 학생의 출·결 상황을 파악하여 근면성·안전지도·건강지도 등 생활지도 자료로 활용함과 아울러 학생 제적 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83조(등·하교) 등교시각은 9:00까지로 하며 하교 시각은 학급 담임의 학급 교육과정 활동 종료시각으로 한다.

제84조(지각·조퇴·결과) ① 지각 처리: 등교시각 이후 등교하는 것을 말한다.

② 조퇴 처리: 당일의 교육과정시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교하는 것을 말하며 사전에 학부모의 전화나 편지 등의 증빙이 있을 경우 허락한다.

③ 결과 처리: 수업시간에 불참(20분)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이다.

제85조(결석)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제86조(독촉·경고 및 통보) 의무교육대상 학생이 2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을 하거나 고용자에 의해 의무 교육을 방해 당할 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5조에 의거 독촉 또는 경고를 한 후 7일이 경과하여도 상태가 계속된 때나 2회 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때에는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7조(법정전염병으로 인한 결석) 「학교보건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법정전염병 및 기타 전염성이 강한 질병에 감염된 학생은 학교장의 명으로 등교를 중지시켜 다른 학생에 전염되지 않게 한다. 이때 법정전염병은 제1종, 2종, 3종을 모두 포함시킨다.

제16장 학칙 개정

제88조(학칙개정) ① 학교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개정한다. 단, 학교장이 학생의 포상.징계.징계이외의 지도방법, 학교내 교육.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학칙 개정은 학교장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8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본교의 학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한다. 단,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전교어린이회장단 임원의 일부도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위원장, 간사(생활지도 업무 담당자),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90조(개정안 발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규칙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91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2조(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93조(연수 및 교육) ① 개정된 학교규칙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94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7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7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9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